

# 建築士法中 改正法律

◎法律第 3,242 号

1980년 1월 4일

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 2 条 第 2 号 및 第 4 号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建築士補”라 함은 第 23 条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에 소속하여 建築士의 業務를 補助하는 者중 国家者중 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·土木·電氣·機械·國土 開發 또는 安全管理分 의 技術系技術資格을 取得한 者 및 大統領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建設部長官에게 申告한 者를 말한다.
4. “工事監理”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設計圖書대로 施工되는가의 与否를 확인하고, 工事 施工者를 指導하는 行爲를 말한다.

第 7 条 第 2 項중 “다른法律”을 “法律”로 한다.

第 14 条 本文의 後段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다만, 建設部長官은 第 1 号의 規定에 의한 學歷이 있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 1 次試驗에 應試하게 할 수 있다.

第 14 条 第 5 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建築士補 (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技士 2 級 또는 建築分野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를 제외한다)로서 5 年 이상 第 23 条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에 소속하여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.

第 23 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23 条 (登 録) ① 建築士가 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單 또는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정하여 建設部長官에게 登録하여야 한다.

② 第 1 項의 경우에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·土木·電氣·機械·國土開發 또는 安全管理分野의 技術系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를 建築士補로 확보하여 建築士業務를 行하고자 하는 者는 綜合建築士事務所로 登録할 수 있다.

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는 共同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(이하 “共同住宅등”이라 한다)의 設計業務를 제외한 建築士業務를 行하며, 綜合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 이외의 者는 共同住宅등의 工事監理業務를 제외한 建築士業務를 行한다.

다만, 大統領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한 建築士 業務는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에 限하여 이를 行할 수 있다.

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중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최규하

국무총리 신현확

국무위원 최증완  
건설부장관

④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録基準 및 登録節次등에 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⑤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録을 申請하는 者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数料를 納付하여야 한다.

第 23 条의 2 의 題目 “(合同事務所)”를 “(檢査事務의 代行 등)”으로 하고, 同条 第 1 項 및 第 2 項을 각각 除하며, 同条 第 3 項중 “合同事務所”를 “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 및 綜合建築士事務所”로 하고, 同条 第 4 項중 “合同事務所를 登録한 者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 관하여”를 “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는 그 建築士事務所의 業務에 관하여”로 한다.

第 27 条 第 1 項중 “補助士”를 “建築士補”로, “閣令”을 “大統領令”으로 한다.

第 28 条 第 1 項 第 4 号를 削除한다.

第 29 条 第 3 項중 “閣令”을 “大統領令”으로 한다.

第 34 条 第 1 項중 “會長 1 人” 다음에 “副會長 1 人”을 插入하고, 同条 第 3 項을 第 4 項으로 하여 同項중 “會長” 다음에 “副會長”을 插入하고, 同条에 第 3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③ 副會長은 常勤으로 한다.

第 35 条 第 1 項중 “閣令”을 “大統領令”으로 한다.

第 38 条 第 2 項중 “前項”을 “第 1 項”으렸 한다. 로

第 41 条중 “第 11 条 第 2 項”을 “第 11 条 第 3 項”으로 한다. 法律 第 3,074 号 建築士法中 改正法律 附則 第 3 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(同 前) 종전의 規定에 의한 2 級建築士 (이하 “2 級建築士”라 한다)는 第 4 条의 規定에 불구하고 3 層 이하인 建築物로서 延面積 1,500 平方미터 이하인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다.

## 附 則

① (施行日) 이 法은 1980 年 4 月 1 日부터 施行한다.

② (2 級建築士에 관한 特例) 2 級建築士는 第 16 条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例銓衡試驗으로 이 法에 의한 建築士의 免許를 받을 수 있다.

③ (建築士補에 관한 經過措置)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補助士로 申告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建築士補로 본다.